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영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0.

발의자 : 윤영석 · 조경태 · 박수영
구자근 · 최형두 · 유용원
임종득 · 이상휘 · 이인선
박대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소득세법」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%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,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,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.

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%정도로 주요 해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.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구조와 지주회사체제, 중복상장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및 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음. 이러한 저배당 기조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, 매매차익 중심의 단기투자 기조를 조장함.

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최근 부동산리츠 등을 활용하여 정부는 도심복합개발, 임대주

택 공급, 기업 자산의 유동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. 이에 분리과세 대상에서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리츠 등을 제외할 경우 민간 자본의 이탈이 우려되는 바, 기존의 투자회사를 포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제5호까지”를 “제5호, 제5호의2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6호까지의”를 “제5호까지, 제5호의2 및 제6호의”로 한다.

5의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

가. 해당 사업연도의 「상법」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이익배당금액”이라 한다)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(이하 이 조에서 “배당성향”이라 한다)이 100분의 40 이상인 법인

나.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, 이익배당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의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법인

제12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제14조제3항제5호의2에 따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

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

- 1) 2천만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4
- 2)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20
- 3) 3억원 초과인 경우: 100분의 35

제155조의7제1항 중 “제2호나목”을 “제2호다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</u></p> <p><u>가. 해당 사업연도의 「상법」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</u></p> <p><u>(이하 이 조에서 “이익배당금액”이라 한다)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(이하 이 조에서 “배당성향”이라 한다)이 100분의 40 이상인 법인</u></p> <p><u>나.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</u></p>

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(이하 “원천징수세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
규정하는 세율

가. (생 략)

<신 설>

1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제14조제3항제5호의2에

따른 법인으로부터 받는
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
의 구분에 따른 세율

1) 2천만원 이하인 경우: 1
00분의 14

2) 2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20

3) 3억원 초과인 경우: 100
분의 35

다. ~ 마. (현행 나목부터
라목까지와 같음)

2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55조의7(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)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차

제155조의7(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) ① -----

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(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 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납부하여야 한다.	
(2) (생략)	(2) (현행과 같음)